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왕정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60 발 의 년 월 일: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왕정순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기덕, 김성준, 김영철, 김인제, 김지향, 민병주,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서준오, 성흠제, 유만희, 유정인, 이숙자,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정준호, 한 신.

홍국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농업법)이 지 난 2023년 7월 25일 제정되어 오는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 예 정임
-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책무로 정하도록 한 것 외에도 시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토록 하는 등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농업이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현실이나, 스마트농업법의 제정 목적이 '농업과 첨단 정보 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 등을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서울시의 농업 관련 산업 역량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 육성과 지속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 정함(안 제3조)
- 나.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주요 내용과 공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과 교육,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스마트농업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법」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스마트 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서 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 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보급
 -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 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
 - 4.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 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 설치 및 운영
 - 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 7.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 · 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 9.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사업
- 10.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
- 11.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 12.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

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국 내외 정부·대학·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인력 교 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연구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스마트농업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4조 (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	• 매년 스마트 육성 계획 수립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 하지 않음
2	제5조제1항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1호,2호,3호,4호,6호	×	 기 추진 사업(농업기술센터)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스마트 농업 기술 및 기자개 개발 · 보급¹)(1호) 종사자교육 및 전문 컨설팅²)(2호), - 청년농업인 양성³)(3호) 신규 시업 발굴 및 육성⁴)(4호), - 생산 및 유통 촉진⁵)(6호)
3	제5조제1항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5호	Δ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등은 현 시점에서 조성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비용추계가 곤란함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5호)
4	제6조 (스마트농업 관련기술개발 등)	Δ	∘ 기술 및 기자재 상용화를 위한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증 비용 발생 ∘ 교육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지원⑥(기추진)
5	제7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	·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및 견학 및 교육 기회 제공 ⁷⁾ (가추진)
6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	Δ	∘ 국제가구 또는 국내외 연구소 등 조사, 연구 협력 추진, 수출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비용 발생
7	제9조(스마트농업 홍보)	×	· 우수 실천 시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 기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1항 제5호는 스마트농업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생산기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안 제6조(스마트농업 관련기술개발 등) 제1항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¹⁾ 스마트 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보급 사업 (220,000천원)

시설토경 관개 자동재어 시스템 보급 시범,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살가스 감축 기술 시범,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살가스 감축 기술 시범, 작목별 맞 춤형 안전관리 실천(농직업 재하여방),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기술 시범,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운영, 산육성 우량 종자 보급 등

²⁾ 종사자교육 및 전문 컨설팅 (65,200천원)

농업인 전문교육(15,200천원), 전문 컨설팅 (종사자교육 및 전문 컨설팅 50,000천원)

³⁾ 청년농업인 양성(후계농업경영인 육성 900천원)

⁴⁾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곤충신업 활성화 49,200천원)

⁵⁾ 생산 및 유통 촉진(서울농산물 브랜드 육성 80,000천원)

⁶⁾ 교육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자원(제5조제1항 관련 - 종사자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에 포함)

^{※ 2024}년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기본계획

⁻ 예산액 : 5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내용: 광역반려식물병원 입원실 스마트 테스트베드 시설 설치,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시설 보완, 센터에서 운영증인 체험농장과 광역반려식물병원 등 스마트팜 시스템 연결 [붙임 참조]

⁷⁾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및 견학 및 교육 기회 재공(제5조제1항 관련 - 종사자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에 포함)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없어 비용추계가 곤란함

※ 참고 : 출원관련 수수료 (특허출원은 심시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진행됨)

- 기본 출원료 : 46,000원(실용신안의 경우 20,000원) * 특허로 출원관련 수수료(2023.08.01. 기준)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는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학교, 연구소 등 조사, 연구 협력을 추진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원 규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비용추계가 곤란함 ※ 서울시 국내 협력추진 사례: 농협(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2020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2024년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기본계획서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기본계획

한국형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한 진보되는 R&D결과의 신속한 현장적용으로 농업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u>추진근거</u>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 농촌진흥법 제2조(사업의 정의) <u>2항,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u>
□ 2024년도 <u>농촌자도사업 시행자참</u> (농촌진흥청)
Ⅱ <u>추진방향</u>
□ 스마트농업 R&D결과 → 테스트베드 교육장 실증 → 현장교육
* (* 187* 20) : 1세대+및레이터 → (* 217* 25) 기술 고도화 : 2세대+지능함께어 → (* 25이송) : 3세대
□ 도시농업에 맞는 스마트 <u>테스트베트</u> 교육모델 발굴
□ <u>광역반려식물병원</u> 입원실 스마트 <u>테스트베드화</u> 시설 확충
□ 센터내 스마트팜 체험농장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강화
LIMENTAL MINOR MANAGER A TITO 67
Ⅲ 사업개요
Ⅲ 사업개요
Ⅲ 사업개요 □ 사업명: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운영
Ⅲ 사업개요 □ 사업명: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운영 □ 사업량: 1개소 288㎡

#################################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결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시설 보완 및 <u>박데이터</u> 활용을 위한 <u>인프라</u> 구축 등 <u>기술실증</u> 고도한
- (환경계측 고도화) 분야별 정밀환경계측(영상, 이미지, <u>지상,지하부</u> 등) 및 스마트농업 연구결과 실증 및 사업화
- 농촌진흥청 『스마트영농 지원시스템(SFES)』연계

□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시설 보완

- 대상시설 : 청사 앞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 주요내용
 - 테스트베드 교육장 시설 보완 및 미비시설 추가 설치
 - 교육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보강 등

□ 광역반려식물병원 입원실 스마트테스트 베드 시설 설치

- 대상시설 : 광역반려식물병원 입원치료실
- 설치면적 : 288㎡ (2연동 비닐하우스)
- 주요내용
 - 스마트팜 운영시설(소규모) 설치(예산범위내)
 - 수분센서, 온습도센서 등 스마트센서 설치
 - 스마트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설치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대상시설 : 센터에서 운영중인 치유농장, 체험농장, 테스트베드 교육장, 광역반려식물병원 입원치료실 등
- O 주요내용
 - 시설별 테이터를 한 눈에 볼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위치에 설치
 - 대상시설중 연계가 어려운 시설은 제외될 수 있으며, 예산범위내 데 이터 시스템 구축

Ⅴ 사업추진 순기표

구분		<u>출진사기(월)</u>													
		2		3	4	5	6	7		3	9	10	11	12	
○계획수립															
○메스트베드 시설 고도화															
<u> </u>													2.5		

VI 기대효과

- □ 스마트농업 기술을 접목한 생산부문 성과제고 및 농업경쟁력 강화
- □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 확대
- □ 도시농업에 적용가능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모델 개발, 끝.

1